상품정보내용펼치기

상품특징

• 청년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 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대출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 업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고객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이 단, 중 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소속기업이 게임업 및 주점 등 사행성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 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 이 무주택인 고객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 / 자 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가능) 이하인 고객*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 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 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2년 이내(임차종료일 초과 불가. 기한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전세 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초과 불가, 기한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2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2년1개월) 추가연장 가능(최장10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10년 5개월) 추가 연장 가능)*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2%p(연 장기간이 1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 이하인 경우 연 0.1%p) 금리 가산 (단, 자산심사신청일 24.7.30 이전인 경우 연 0.1%p 가산)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 최초 1회차 연장에 한하여 상환 및 금리가산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 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 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이자계산방법>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 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 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 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혼합 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 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 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 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 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공유주택(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쉐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역구분 없음)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단,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 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 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추가대출

• 근로자 · 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 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기존대 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미성년자) 이상·청년 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이율리스트 펼치기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2.2% ~ 연 3.3%(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기한연장 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인 경우에는 아래 기본금리에서 0.2%p인하구분, 대출금리구분대출금리부부합산연소득2천만원 이하연 2.2%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연 2.5%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연 2.9%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신혼가구)연 3.3%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청년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전자계약, 대출한도 30%이하 신청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는 최대 0.5%(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0%, 다자녀 가구는 0.7%)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각 연 1.0%p* 한부모가구: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p (2024.04.26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해당 우대금리 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간 적용)*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자(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이 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소속기업이 게임업 및 주점 등 사행성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청년전용 우대금리(임차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간 적용):연 0.3%p-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연 0.3%p(단,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연 0.2%p-부동산전자계약:연 0.1%p(2025.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단, 자산심사신청일이 2025.1.1이후인 경우 최초 대출기한 1회에 한하여 해당 우대금리 적용)-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적용(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연 0.2%p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4.3% (가산금리 적용 시)*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기본금리: 연 2.2% ~ 연 3.3%(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기한 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인 경우에는 아래 기본금리에서 0.2%p인하

구분		대출금리
부부합산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연 3.3%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 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청년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전자계약, 대출한도 30%이하신청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는 최대 0.5%(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0%, 다자녀 가구는 0.7%)까지 적용 가능합니다.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각 연 1.0%p한부모가구: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p (2024.04.26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해당 우대금리 적용일로부터최대 4년간 적용)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

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자(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이 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소속기업이 게임업 및 주점 등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청년전용 우대금리(임차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간 적용): 연 0.3%p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단,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5.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단, 자산심사신청일이 2025.1.1이후인 경우 최초 대출기한 1회에 한하여 해당 우대금리 적용)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적용(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 연 0.2%p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4.3% (가산 금리 적용 시)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 위 기준 초과한 경우▶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된 금리에 연 2.0%p 가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용조건리스트 펼치기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유의사항 및 기타리스트 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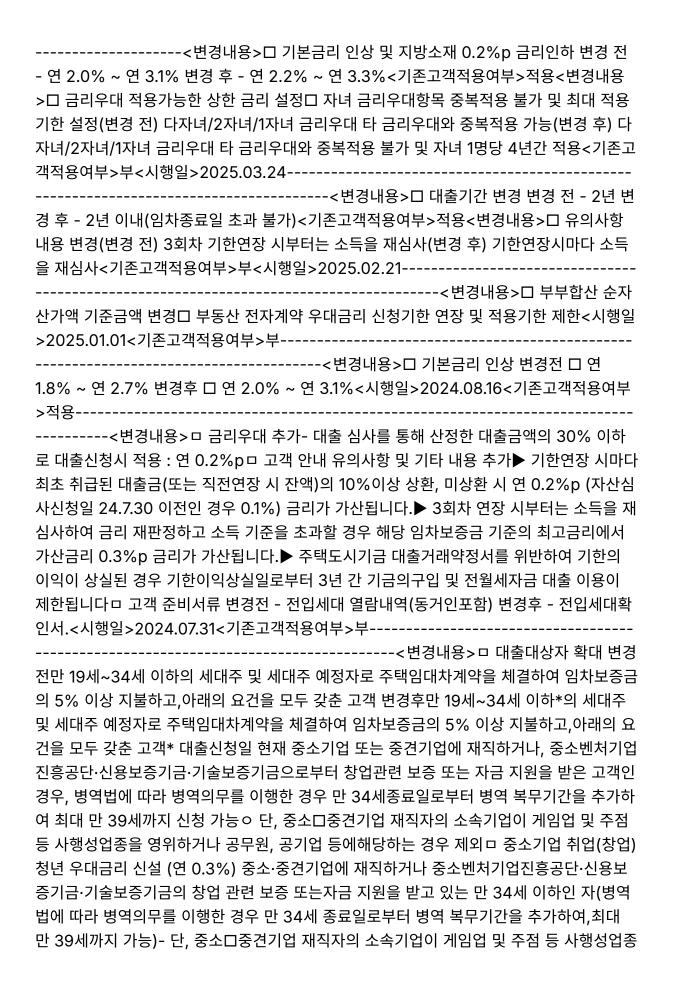
기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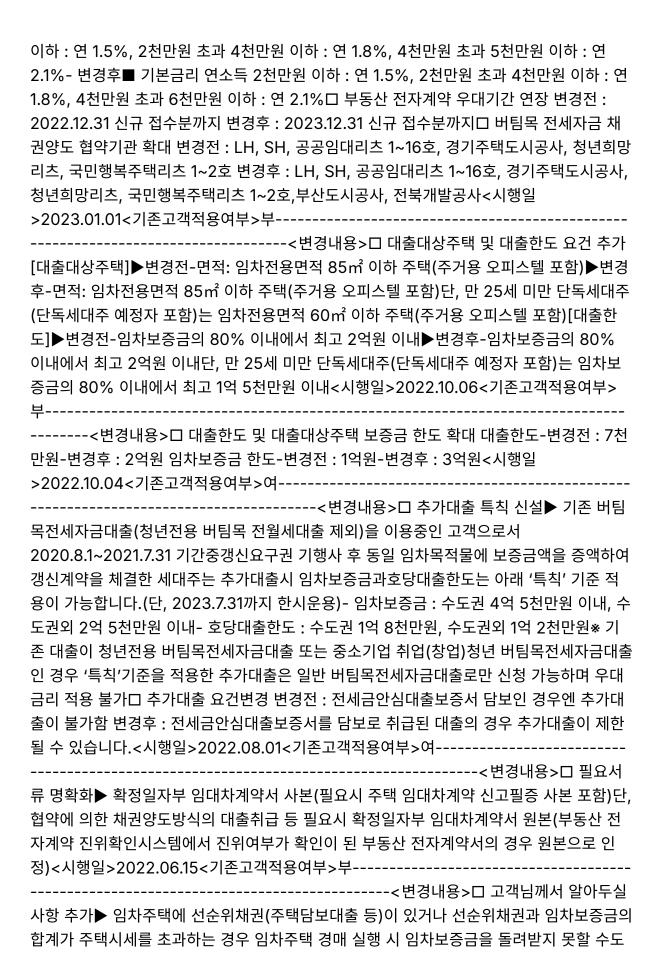
유의사항

▶당초 대출받은 차주 중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으로서 우대금리를(연 0.3%) 적용받은 경우, 은행은 대출 기한연장 시마다 당초 대출조건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당초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합니다.▶당초 대출받은 차주 중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 0.3%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자에 대하여 대출기한 연장 시마다대출조건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당초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한다.▶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이상상환, 미상환 시 연 0.2%p(연장기간이 1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 이하인경우 연0.1%p) 금리가 가산됩니다. (자산심사신청일 24.7.30 이전인 경우 연 0.1%p 가산)▶기한연장 시마다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 재판정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가산금리 0.3%p 금리가 가산됩니다.▶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기금의 구입및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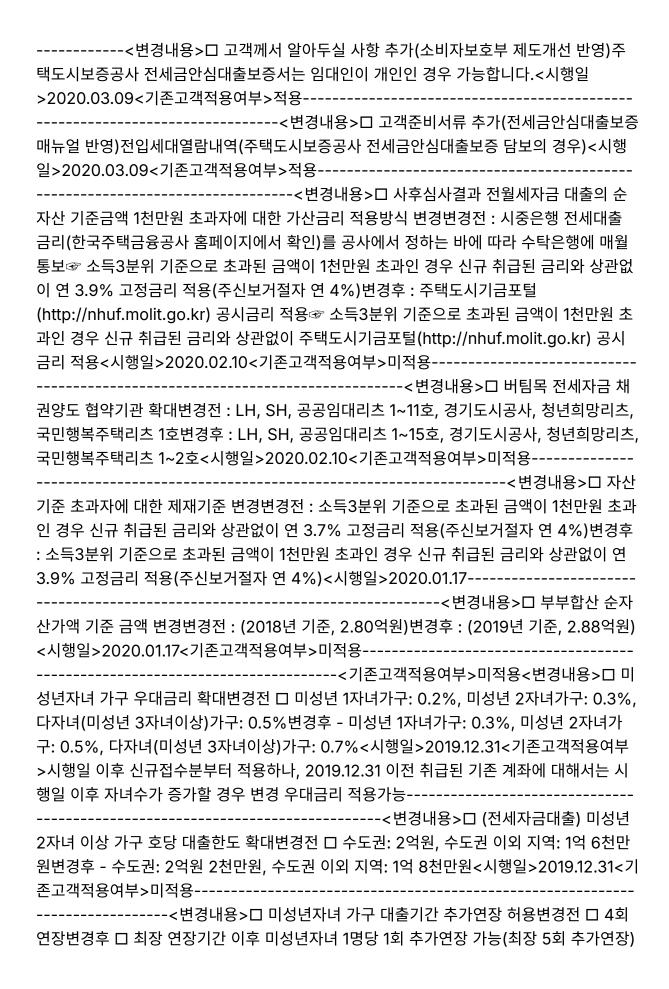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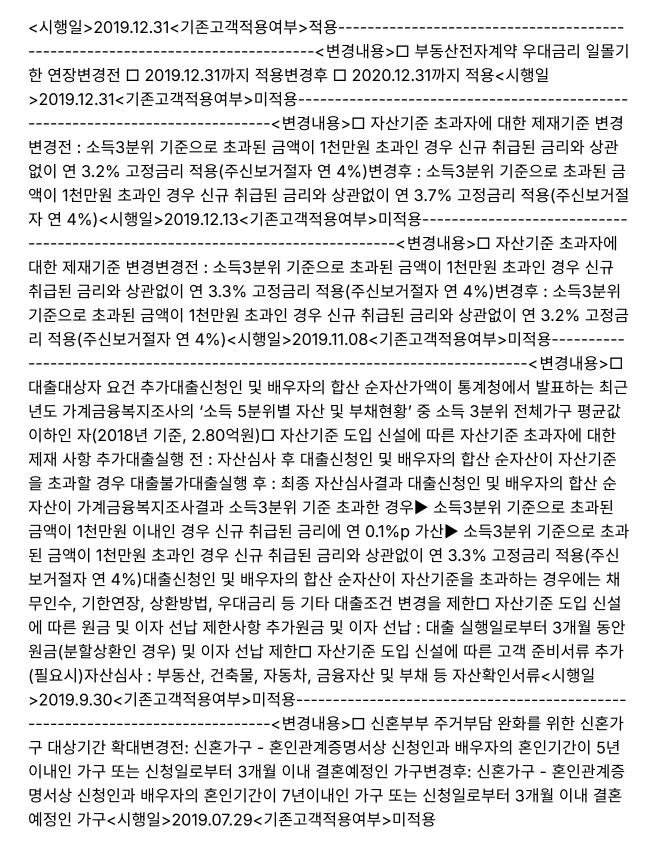
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당초 대출받은 차주 중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으로서 우대금리를(연 0.3%) 적용받은 경우, 은행은 대출 기한연장 시마다당초 대출조건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당초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 최초 1회차 연장에 한하여상환 및 금리가산 없이 기한연장 가능<시행일 >2024.04.26<기존고객적용여부>부
<변경내용>□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업무 특칙 운용 종료<시행일>2023.08.01<기존고객적용여부>부
<변경내용>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변경전: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변경후: 폐지<시행일>2023.01.01<기존고객적용여부>부



있으며, 임자수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성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성당한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2022.05.20<기존고객적용여부>여
~~~~~~~~~~~~~~~~~~~~~~~~~~~~~~~~~~~~
<변경내용> 대출대상주택변경전: (추가)변경후: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 문구수정변경전: 경기도시공사변경후: 경기주택도시공사<시행일>2021.09.17<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변경내용>□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기준 금액 변경변경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변경후 : (2020년 기준, 2억9 천2백만원)<시행일>2021.01.01<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변경내용>□ 고객준비서류(대상주택 문구 추가)변경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택 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의 경우변경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시행일>2020.07.17<기존고객

적용여부>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

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 기한의 이익이란? >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 과됩니다.
-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 (1111) (11111) 1111 (11111) 1111 (11111) 1111 (11111) 1111 (11111) 1111 (11111) 1111 (111111) 1111 (111111) 1111 (111111) 1111 (111111) 1111 (111111) 1111 (111111) 1111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상품 시행일: 2015.01.02유효기간: 2025.07.04 ~ 2026.12.31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 함)단,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부동 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다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다 新·舊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 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최 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 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 리세대, 결혼예정자 등口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소득 종류 확인 목적)-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 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 (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 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확인서 등口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 서류*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준법감시인 심의 필 제2025-2722-7호(2025.07.04)] / 유효기간(2025.07.04~2026.12.31)